

홍은동 청년협동조합[이웃기웃]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2026. 06. 05.)

-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청년협동조합주택의 추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 **1인 청년 가구(만19세 이상 ~ 만35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 금회 공급은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입니다.
-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서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원하시는 신청예정자는 공급 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나 서류미제출로 인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모집공고일은 **2026년 06월 05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홍은동 청년협동조합 주택의 특징

- 1인 청년계층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거 문화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상호간 협력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는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주거 공간 외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 주택개요

- 소재지 :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대길 98 및 94
(홍은동 345-3 및 345-5, 해담하우스 가동·나동)

단지명	총 세대	주차대수	승강기	최고층	구분
홍은동 청년협동조합	31세대	17면 (가동 9면, 나동 8면)	미설치	5층	도시형 생활주택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총 3호

단지명	호	전용 면적 (m2)	신청 유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인 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흥은동 청년협동조합 가동 (명지대길 98)	0302	29.61	29형	22,750,000	126,500	28,450,000	158,700
	0501	25.82	25형	19,060,000	106,900	23,830,000	133,100
	0503	24.52		18,450,000	106,900	23,060,000	128,800

- ※ 전용 **25형** 또는 **29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동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첨동호 변경 또는 교환 불가함**)
- ※ 동일한 신청유형 내에서도 세대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 금회 모집세대는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가입에 동의하셔야 하며**, 조합 가입비 및 커뮤니티실 운영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주택 도면 상에 있는 옵션과 실제 설치된 옵션이 다르므로 주택공개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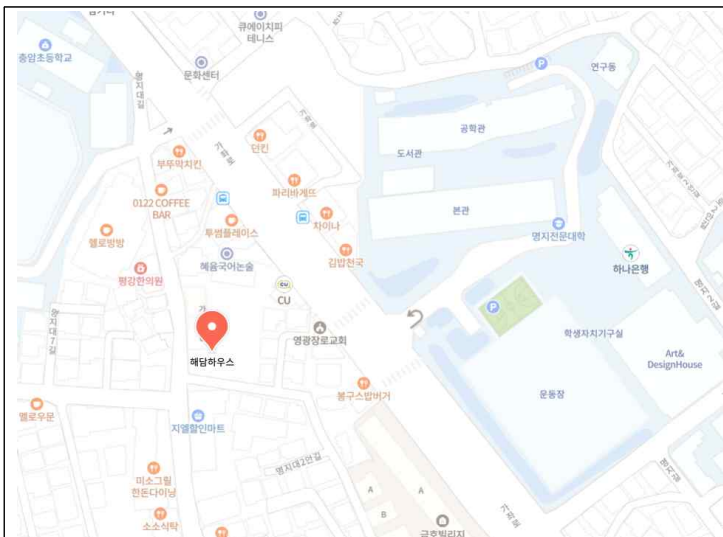
- 최초계약기간 :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거주가능기간 : 만 **39세까지** 입주자격 및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시 거주 가능
(단, 조합원으로서 의무 미이행 시 갱신계약 불가능)

■ 상호전환제도

전환유형	내 용
월임대료 ↓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7% ▶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
보증금 ↓ 월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 납부

-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 가능합니다.(**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 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셔야 실입주일부터 전환된 금액으로 월임대료가 일할 계산합니다.
-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 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입지여건



- 대중교통
 - 지하철역 : 도보로 20분 이내 위치 (6호선 새절역)
 - 버스 : 마을버스, 지선버스 150m이내
- 주변환경
 - 인근에 다양한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이 있으며,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 대상지 8m 가로변으로 상가들이 입지하고 후면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인 저층 주거지역임

■ 공급일정

①	모집공고	—	2026. 06. 05.(금)
	↓		
②	주택공개	—	2026. 06. 08.(월) ~ 2026. 06. 12.(금) 10:00~17:00
	↓		
③	신청접수(인터넷청약)	—	2026. 06. 22.(월) 10:00 ~ 2026. 06. 24.(수) 17:00
	↓		
④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6. 07. 03.(금)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⑤	심사서류 제출	—	2026. 07. 06.(월) ~ 2026. 07. 10.(금)
	↓		
⑥	자격검증 및 소명	—	2026. 07.~ 2026. 08.
	↓		
⑦	조합단 면담평가 대상자발표	—	2026. 09. 02.(수)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⑧	조합단 인터뷰	—	2026. 09. 07.(월) ~ 09. 23.(수) 기간 중 1일
	↓		
⑨	최종입주자 발표	—	2026. 09. 30.(수)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⑩	당첨자 주택공개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⑪	계약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0:00~17:00
	↓		
⑪	입주기간	—	2026. 11. 02.(월) ~ 2026. 12. 31.(목)

※ 위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06. 0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¹⁾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홍은동 청년협동조합(이웃기웃)**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 이행에 동의하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¹⁾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 설명은 [붙임2]참조

신청자격	내 용
1인 가구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상(2007. 06. 05.이전 출생) ~ 만35세 이하(1990. 06. 06. 이후 출생)의 1인 가구 청년 (대학생 제외) ※ 가구원수는 [붙임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 수로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대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 세대분리를 조건으로 현재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지원가능 ※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생은 제외

■ 소득·자산기준 (상세 설명은 [붙임1]참조)

구 분	기 준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1순위 50%이하인 자 우선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가구원수</th> <th>1순위</th> <th>2순위</th> </tr> <tr> <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 <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2,669,354원</td> <td>3,432,027원</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순위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1순위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2,669,354원	3,432,027원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가구 20%p 가산된 금액임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 : 현재가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자산가액(이하)</th> <th>자동차가액(이하)</th> </tr> </thead> <tbody> <tr> <td>24,500만원</td> <td>4,542만원</td> </tr> </tbody> </table>		총자산가액(이하)	자동차가액(이하)	24,500만원	4,542만원				
총자산가액(이하)	자동차가액(이하)								
24,500만원	4,542만원								

※ 입주자격 중 중 주택소유·소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06. 05.)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조회결과는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자 선정 방법														
1차 서류심사	<p>○ 신청자가 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공급세대의 3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p> <p>▶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p> <p>※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아래의 가점 순으로 서류심사대상자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가점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4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30%;">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직장소재지 또는 현거주지 (선택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대문구 홍은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구(홍은동 외 서대문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접구(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그 외 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p>※ 동일배점일 경우 대상자 전부를 선정</p>				평가항목	배 점	직장소재지 또는 현거주지 (선택가능)	서대문구 홍은동	5	해당구(홍은동 외 서대문구)	4	인접구(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2	서울시(그 외 구)	1
	평가항목	배 점													
직장소재지 또는 현거주지 (선택가능)	서대문구 홍은동	5													
	해당구(홍은동 외 서대문구)	4													
	인접구(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2													
	서울시(그 외 구)	1													
2차 주관적 평가	<p>○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명단(3배수)을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 실시</p> <p>▶ 평가주체 : 해당 조합 운영진(조합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30%;">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주지원서 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 점	입주지원서 평가	5								
평가항목	배 점														
입주지원서 평가	5														
3차 조합단 인터뷰	<p>○ [서류심사점수(1차)] + [주관적 평가점수(2차)]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공급세대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p> <p>▶ 인터뷰주체 : 해당 조합 운영진(조합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15%;">배 점</th> <th style="width: 35%;">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참여의지, 적극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체적응성, 협동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체에 대한 이해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 점	합 계	참여의지, 적극성	5	15	공동체적응성, 협동성	5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5		
평가항목	배 점	합 계													
참여의지, 적극성	5	15													
공동체적응성, 협동성	5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5														
최종 입주자 선정	<p>○ 조합 인터뷰점수가 높은 순으로 1배수를 최종입주자로 선정</p> <p>- 동점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산추첨에 의함</p> <p>- 최종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배수는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 입주포기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p>														

3

사전 주택공개

■ 신청접수 전 주택공개

- 공개기간 : 2026. 06. 08.(월)~ 2026. 06. 12.(금) 10:00~17:00
 - 주택공개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직접 방문
 -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주택공개 관련 문의 : 관할 센터
 - ▶ (홍은동 이웃기웃) 은평서대문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10-9400~1

4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06. 22.(월) 10:00 ~ 2026. 06. 24.(수)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유형별로 신청 가능하며 호수는 전산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준비사항 :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소지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등), 거주 또는 직장소재지 등] 서류심사 시 **해당접수가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처리 됩니다.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

6페이지 '입주자선정방법'의 '1차 서류심사' 항목 참고

신청자격(1인 청년 또는 졸업예정자), 소득, 거주 또는 직장소재지

■ 신청순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신청사항 입력) → 6단계(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 시간

신청 기간은 **2026. 06. 22.(월) 10:00 ~ 2026. 06. 24.(수)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서류 제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6. 07. 03.(금)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 07. 06.(월) ~ 2026. 07. 10.(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방 법	보낼 주소
-----	-------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신청주택에 맞게
"홍은동청년협동조합_심사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이메일 (택1)	등기우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홍은동청년협동조합 담당자 앞(06336) ※ 구비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 으로 발송 ※ 2026. 07. 10.(금) 17:00 이전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coop-housing@i-sh.co.kr로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제출 ※ 이메일 제목: 홍은동청년협동조합 심사서류_성명_날짜 ※ 2026. 07. 10.(금) 17:00 이전 제출 완료

- ※ 우편접수 시 일반우편은 분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서류 접수여부를 유선(☎ 02-3410-8566)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서류 미접수,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하고 상세증명서로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 입주지원서(주관적 심사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첨부 (별첨1.2.3)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격이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 대학
	※ 6p의 직장소재지 가점 해당자는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인에 한함) ▶ 재직증명서(직장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직장인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일정 : 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당첨자 및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득, 자산 등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7

조합단인터뷰 대상자 발표(2배수)

■ 조합단 면담평가 대상자 발표일 : 2026. 09. 02.(수) 17:00

■ 조합단인터뷰 : 2026. 09. 07.(월) ~ 09. 23.(수) 중 1일

- 인터뷰장소 및 시간 : 홈페이지에 공개
- 면접 위원 : 해당주택 조합 운영진

8

최종입주대상자 발표(1배수)

■ 최종입주대상자 선정 : 2026. 09. 30.(수) 17:00 공사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조합 운영진에서 진행한 인터뷰 점수가 높은 자부터 1배수 선정

■ 동호선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 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 불가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 최종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배수는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는 미계약, 계약취소, 입주포기,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 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 효력은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합니다.(2027. 09. 29. 까지)

9

주택 사전점검

■ 당첨자 주택공개

- 공개기간 : 2026. 10. 12.(월)~ 2026. 10. 16.(금) 10:00~17:00
 -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개로, 계약 전 주택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점검
 -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주택공개 관련 문의 : 관할 센터
- ▶ (홍은동 이웃기웃)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10-9400~1

10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 계약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연결)

■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만 가능) ③ 신청인 도장 (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대리인 계약 시	▶ 직계가족인 경우 :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도장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 신청인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11

입주안내

■ **입주 기간 : 2026. 11. 02.(월) ~ 2026. 12. 31.(목)**

■ **입주 안내 :**

- 입주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대상자에게 계약안내문 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할센터와 협의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 (홍은동 이웃기웃) 은평서대문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10-9400~1

12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해당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1인가구)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되며,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구분	유의사항
	<p>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p>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합니다. • 신청자격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당첨탈락, 계약취소 및 퇴거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보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 세대구성원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 및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대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확인하시기

구분	유의사항
	<p>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 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시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 신청접수와 입주자 선정 관련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66

■ 주택공개와 입주 관련

- [홍은동 이웃기웃] 은평서대문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 02)6910-9400~1

2026. 06. 0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산정방법,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p>소득</p>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 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토지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 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 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입증하여야 함
<p>총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 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분		산정방법
		<p>시가표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장기카드대출상품(카드론)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붙임2]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대상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관련 유의사항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주택소유, 중복입주, 소득자산기준 등의 적격여부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로 입주 시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부적격으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해당세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 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